

1. 국가 산업안전보건 규제 체계

1.1 산업안전보건 규제 체계 설명

개요/인용

헌법 조항은 국가에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이행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인도의 작업장 안전보건 법들의 기초를 이룬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규제하는 안전보건 법령들은 제조업, 광업, 항만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이 네 분야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1987년에 개정된 1948년 공장법, 1986년 항만근로자(안전, 보건 및 복지)법,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86년 아동노동(금지 및 규제)법, 1957년에 개정된 1952년 광산법 및 1957년 광산규칙이다. 그밖에도 특별한 유해성 또는 특별한 분야 및 영역에 적용되는 특정한 규정들이 있다. 인도의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노동부와 주 노동부서의 책임이다. 노동부는 또한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환경에 관한 국가정책을 공표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인도의 산업안전보건 개요

인도의 근로감독 개요

1952년 광산법 (1952년 제35호).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살충제법

유해성이 있는 미생물, 유전자변형유기체(GMO) 또는 세포의 생산, 사용, 수출입 및 보관에 관한 규칙

1986년 항만근로자(안전, 보건 및 복지)법. (1986년 제54호.)

2. 적용 범위 및 예외

2.1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안전보건

비고/해설

산업안전보건(OSH) 관련 규정을 언급한 몇몇 법규들이 있지만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도의 산업안전보건의 개념은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지만 일부 법조항만이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다.

2.2 근로자의 정의

비고/해설

인도에는 산업안전보건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의는 노동법령을 검토해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된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급여를 받는지에 상관없이 제조과정,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 상점처럼 상업적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공장이나 시설에 직접 고용되거나 소개업체, 계약자를 통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는 견습생과 시설이나 공장의 사무업무 또는 시설이나 공장의 작업에 부수적이거나 예비단계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된다. 본 정의에는 여성, 남성 및 청소년이 포함되며, 조직 또는 비조직영역(개인 또는 자영업자가 소유한 기업과 10인 미만을 고용한 기업)의 근로자 역시 포함된다.

이 정의는 1948년 공장법, 주 정부에 의해 제정된 다양한 상점 및 시설법, 1948년 근로자국가보험법 및 2010년 그 개정법, 여러 주정부에 의해 제정된 육체근로자 관련 법령, 2013년 작업장 내 여성 성희롱(예방, 금지 및 보상)법, 1923년 근로자보상법 및 개정법, 그리고 2009년 근로자보상법에서 인용된 근로자 정의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한다.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은 자영업자 및 재택근로자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누락된 모든 근로자를 비조직 근로자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법령마다 근로자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근로자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보호도 달라질 수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1948년 근로자국가보험법 (1948년 제34호).

2010년 근로자국가보험법 (개정) (2010년 제18호).

근로자 보상법 (개정) (2009년 제45호).

2013년 작업장 내 여성 성희롱(예방, 금지 및 보상)법 (2013년 제14호).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2008년 제33호).

2.2.1 특정 분류의 근로자의 범위

2.2.1.1 이주근로자

개요/인용

이주근로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들은 고용의 성격 및 조건에 따라 비조직 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로 취급된다.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 2(m),(n))

법은 근로자의 정의에 주간 이주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정한다.

(1979년 주간 이주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법은 근로자의 정의에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 출국하는 인도 근로자를 포함한다.

(근로자 보상법 § 2(l))

비고/해설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은 이주근로자를 임금근로자 및 비조직 근로자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이주근로자는 근로자의 정의 범위에 분명히 포함된다.

참고자료

1979년 주간 이주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79년 제30호) [개정].

근로자 보상법 (개정) (2009년 제45호). (§ 2(l))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2008년 제33호). (§ 2(m),(n))

2.2.1.2 가사근로자

개요/인용

법은 가사근로자를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시킨다.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2(n))

법령은 또한 가사근로자의 복지를 분명히 보호한다.

(2013년 작업장 내 여성 성희롱(예방, 금지 및 보상)법 §2(e))

비고/해설

가사근로자는 2008년 비조직 근로자법에 따라 비조직 근로자로 간주된다. 가사근로자는 1947년 노동쟁의법이나 1929년 근로자보상법 같은 노동법규의 근로자 정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참고자료

2013년 작업장 내 여성 성희롱(예방, 금지 및 보상)법 (2013년 제14호). (§ 2(e))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2008년 제33호). (§ 2(n))

2.2.1.3 재택근로자

개요/인용

법은 재택근로자를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재택근로자를 재료, 장비 또는 다른 투입재를 사업주가 제공하는지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작업장이 아닌 근로자의 자택 또는 근로자가 원하는 다른 장소에서 급여를 목적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자로 정의한다.

비고/해설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 체계는 재택근로자를 비조직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제12차 산업안전보건 5개년 계획(2012-2017)에 대한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재택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ILO협약 제177호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앞의 보고서는 이 ILO 지침을 이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자료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2008년 제33호). (§ 2(b))

2.2.1.4 자영업자

개요/인용

자영업자는 근로자 정의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은 자영업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나 주정부가 때때로 공시하는 금액 이하의 월수입이 있는 비조직 부문에 종사하거나 주정부가 정한 한도 내의 경작지를 소유한 자로 정의한다.

참고자료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2008년 제33호). (§ 2(k))

2.3 사업주의 정의

비고/해설

인도에는 산업안전보건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 개념의 정의는 노동법령을 검토해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부의 부서, 조직, 사업, 시설, 기업, 기관, 사무소, 분과 등과 관련되거나 작업장의 경영, 감독 및 최종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을 지칭한다. 사업주는 공장 시설의 점유자를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지는 아니하다. 나아가, 사업주는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급여를 목적으로 하든 아니하든, 고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1947년 인도노동쟁의법 (1947년 제14호).

근로자 보상법 (개정) (2009년 제45호).

2013년 작업장 내 여성 성희롱(예방, 금지 및 보상)법 (2013년 제14호).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2008년 제33호).

2.4 업종별 예외

2.4.1 농업

개요/인용

대규모 농장의 사업주는 적절한 위생설비와 식수를 위한 시설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법을 위반하게 되고 3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루피(USD 8.59)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장노동법 §§ 2(f), 8-10)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장에 보관된 살충제의 위치를 알려줘야 하고, 그러한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취급방법을 공지해야 한다. 살충제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제조자는 살충제에 잘못된 상표를 붙여서는 안 되고, 승인받지 않은 살충제를 판매, 유통, 전시해서는 안 된다.

(살충제법 §29)

농업 부문에 사용될 동력탈곡기 같은 위험기계의 제조자는 해당 기계가 인정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제조자는 해당 기계에 위험표지, 제작 상세 및 동력 조건을 부착하여야 한다. 결함 있는 기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는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983년 위험기계법 §§ 13-17)

제한/의무

차, 커피, 고무 또는 기나수를 재배하고 25에이커가 넘는 경작지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적용

이 배제되지 않는다.

비고/해설

농업 부문은 총 근로자의 약 58%를 고용하고 있다(제12차 산업안전보건 5개년 계획 (2012-2017)에 대한 실무그룹 보고서). 또한 농업 부문은 위험기계기구,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의 사용, 먼지, 열, 위험한 동물 같은 기후적, 환경적 요소의 존재 그리고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매우 위험하다고 간주된다. 대규모 농장의 근로자를 관장하는 법령과 함께 살충제와 위험기계의 사용을 관장하는 법령의 특정 규정들이 농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산업안전보건 수단이다.

참고자료

농장노동법 (§§ 2(f), 8-10)

1983년 위험기계(규제)법 (1983년 제35호). (§§ 13-17)

살충제법 (§ 29)

2.4.2 건설업

참고자료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2.4.3 서비스업

2.4.4 공공 부문

비고/해설

명백하게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여러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규정들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2.4.5 기타

개요/인용

사업주는 청결하고, 환기 상태가 양호하고, 과밀하지 않고, 식수와 적절한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작업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 3, 4)

사업주는 청결하고, 환기가 되고, 과밀하지 않고, 식수와 적절한 위생시설을 제공하

는 작업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 8-15, 17, 19, 24, 25)

성희롱 방지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적용은 가사근로자와 비조직 부문의 근로자에 까지 적용된다.

(2013년 작업장 내 여성 성희롱(예방, 금지 및 보상)법)

정부는 육체근로자와 관계된 안전보건을 증진하는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1982년 타밀나두 주 육체근로자(고용과 근로조건 규제)법)

2012년에 개정된 1948년 공장법 조항들은 연방정부 또는 다른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장에 적용된다.

(1948년 공장법 § 80)

정부는 육체근로자와 관계된 안전보건을 증진하는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1969년 마하라슈트라 주 머리 짐꾼, 하인 및 기타 육체근로자(고용과 복지 규제)법 § 3)

사업주는 근로자(미숙련 육체근로자)에게 식수, 그늘, 응급처치, 휴식시간, 응급상황 및 작업장에 존재하는 다른 건강상 유해에 대해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5년 전국농촌고용보장법 § 5)

비고/해설

법은 근로자를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정의한다. 또한 자영업자, 가사근로자, 육체근로자 및 채택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의 적용범위는 모든 근로자에게 미친다. 적용범위의 한계와 특성은 근로자가 속한 업종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담배산업 근로자를 위한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수단은 하나의 특별법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비조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 체계는 별개의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80)

1982년 타밀나두 주 육체근로자(고용과 근로조건 규제)법 (1982년 제33호). (§ 3)

1969년 마하라슈트라 주 머리 짐꾼, 하인 및 기타 육체근로자(고용과 복지 규제)법 (1969년 제30호). (§ 3)

1993년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개정 (1993년 제41호). (§§ 8-15, 17, 19, 24, 25)

2013년 작업장 내 여성 성희롱(예방, 금지 및 보상)법 (2013년 제14호).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2008년 제33호). (§§ 3,4)

2005년 마하트마 간디 전국농촌고용보장법 (2005년 제42호). (§ 5)

2.5 산업재해의 정의

2.6 업무상 질병의 정의

2.6.1 업무상 질병 목록

참고자료

1948년 근로자국가보험법 (1948년 제34호). (별표)

근로자 보상법 (개정) (2009년 제45호). (별표 III)

2.6.2 그 외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하기 위한 체계

개요/인용

근로자 보상법은 근로자들이 지정기관이 확인하고, 이 법의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

근로자 보상법 (개정) (2009년 제45호). (별표)

3.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기관 및 프로그램

3.1 산업안전보건 담당 국가기관

개요/인용

‘공장 자문서비스 및 노동 연구소’(DGFASLI)는 공장 조사단과 협력해서 1948년 공장법의 적용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노동부 부속 사무소이다. DGFASLI는 공장 감독관과 업체의 기술자들을 훈련하고 산업계와 향만의 여러 분야에 걸친 조사를 수행한다.

광산안전사무소(DGMS)는 광산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노

동부를 지원한다. DGMS는 노동부 사무소의 하위 기관으로 필요한 법령 마련 및 기준 수립, 자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의 강력한 감독,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경각심 고취 프로그램을 통하여 광산업계에 교육뿐 아니라 예방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고/해설

‘작업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국가정책’은 § 4.1.1 및 § 4.1.2상의 효과적인 근로감독 시스템을 통하여 이행을 모니터하는 등 효과적인 집행체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광산안전사무소(DGMS)는 노동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참고자료

공장 자문서비스 및 노동 연구소(DGFASLI) 공식 홈페이지

광산안전사무소(DGMS) 공식 홈페이지

3.1.1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국가기관은 광산, 공장, 부두 및 항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집행을 감독한다. 이 기관들의 기능은 다양한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장비와 기계류의 승인, 작업장 안전보건 수단에 대한 논의와 경각심의 증진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공장 자문서비스 및 노동 연구소(DGFASLI) 공식 홈페이지

광산안전사무소(DGMS) 공식 홈페이지

3.1.2 의장 및 구성

3.2 국가 산업안전보건 연구 프로그램 또는 기관

3.2.1 목적, 역할 및 기능

3.2.2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3.2.3 자금 조달원

3.3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개요/인용

인도 헌법은 정부는 남녀 근로자의 건강과 능력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아동 착취를 방지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도 국민이 적절하지 못한 노동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보장 수단을 이행하여야 한다.

‘에이즈와 노동세계에 관한 국가정책’은 작업장의 경각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작업장의 경각심 고취 및 차별적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추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인도 정부는 노동고용부를 통하여 국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채택하고 주정부에 기준 이행 및 감독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내용의 ‘작업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국가정책’을 공표하였다.

비고/해설

인도에는 종합적인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나 헌법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어 근거가 있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은 인도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근로자의 의료와 복지 수요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부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조항 외에도,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수립은 ‘작업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국가정책’ 그리고 ‘에이즈와 노동세계에 관한 국가정책’에 언급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제정한 다양한 법령들이 부문별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러한 법령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체계와 함께 국가차원의 산업안전보건 수단을 형성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즈와 노동세계에 관한 국가정책’이 인도에서 에이즈와 작업장에 관해 마련되어 있는 유일한 법적 문서이다. 이는 법은 아니지만 인도 노동부에 의해 수립되어 발표된 정책이다.

‘작업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국가정책 2010’은 정책문서이고 아직은 국가법 또는 개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입법화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인도 헌법. (제39(e)조)

에이즈와 노동세계에 관한 국가정책 (§ 2)

작업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국가정책 (§ 2.4)

3.3.1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협의

4.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4.1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개요/인용

인도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 작업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사업주는 의료관리,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 환기가 되고 과밀하지 않은 작업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B, 1923년 근로자 보상법 (1923년 제8호) § 3)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의 사업주와 공장 점유자는 그들의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와 점유자는 대규모 현장 사고를 방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는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필수적인 정보와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와 점유자는 사고발생 시 건강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상세하게 기술한 부지내외의 비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보관 및 수입에 관한 규칙, 규칙 4, 13-15)

비고/해설

1948년 공장법 및 1929년 근로자 보상법을 포함한 몇몇 법령이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작업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B)

1923년 근로자 보상법 (1923년 제8호) [개정]. (§ 3)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보관 및 수입에 관한 규칙 (규칙 4, 13-15)

4.2 직접 고용 근로자가 아닌 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개요/인용

사업주는 자신의 작업시설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근로자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계약직 신분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나아가 시설 내에서 유일하게 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에 의해서 제공되는 산업안전보건 수단에 대한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봄베이 상점 및 시설법. (§ 5)

4.3 동일 작업장에서 2인 이상의 사업주 간의 협업

개요/인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작업 시설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느 한 근로자가 2이상의 사업주의 공동 고용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주는 고용 중에 있는 근로자가 일으킨 손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1923년 근로자 보상법 (1923년 제8호) [개정]. (§ 3(2A))

4.4 작업 관련 근로자의 보건 감독

개요/인용

사업주 및 점유자는 근로자가 유해물질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유해물질 작업을 중단한 후 12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1C)

4.4.1 감독이 요구되는 특정 유해성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별표 I)

4.5 작업 환경 및 작업 관행의 감독

4.6 개인보호구 제공 의무

개요/인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보와 작업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은 특히 공장, 유해물질, 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시설 및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관계가 있다.

사업주는 작업과정의 과도한 빛이나 입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스크린 및 고글 같은 눈 보호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48년 공장법 § 35)

사업주는 근로자가 살충제의 조제, 배합, 운송, 유통 및 사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보호복과 장비, 그리고 근로자들과 그들에게 공급되는 물건들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다른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살충제법 § 34)

사업주는 건축 및 건설 공사의 근로자에게 눈 보호구, 안전모, 습윤 시멘트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방수장화, 방수 코트 및 모자, 장갑, 그리고 알칼리 같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 45, § 46)

사업주는 항만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 도구, 장비 및 복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1986년 항만근로자법 § 21(2)(v))

법은 광산근로자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안전화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임감독관이 인증한 안전모를 제공해야 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다른 보호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어떤 경우에도 재고가 바닥나지 않도록 안전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957년 석탄광산규정, 규칙 191, 191A, 191B)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35)

1957년 석탄광산규정 (S.R.O. 34019). (규칙 191, 191A, 191B)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 45, § 46)

살충제법 (§ 34)

1986년 항만근로자(안전, 보건 및 복지)법. 1986년 제54호. (§ 21(2)(v))

4.7 개인보호구 사용 의무

비고/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법은 근로자 본인에게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4.8 응급처치 및 복지시설 제공 의무

4.8.1 응급처치의 준비

개요/인용

사업주는 규정된 의약품이 구비된 구급상자와 보관장을 준비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별도의 담당자가 구급상자를 관리하도록 한다.

(1948년 공장법 § 45)

사업주는 규정된 의약품이 구비된 구급상자와 보관장을 준비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0루피(USD 17.24)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52년 광산법 § 21)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응급처치 설비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 36)

사업주는 구급상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응급처치 설비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961년 자동차운송 근로자법 § 12)

사업주는 모든 제조 시설에 응급처치 설비를 구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 15)

제한/의무

구급상자는 근로자 150명당 1개씩 구비되어야 한다. 공장의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면 앰블런스 룸을 구비하여야 한다.

(1948년 공장법 § 45)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이면 응급처치실이 구비되어야 한다.

(1952년 광산법 § 21)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5)

1952년 광산법 (1952년 제35호). (§ 21)

1961년 자동차운송 근로자법 (1961년 제27호). (§ 12)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 36)

1993년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개정 (1993년 제41호). (§ 15)

4.8.2 위생 설비

개요/인용

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시설의 전반적인 청결함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사업주는 시설 내의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충분한 변기와 소변기를 갖추어야 한다. 여성에 특화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타구(唾具)도 구비되어야 한다.

(1948년 공장법 §§ 11, 19, 20)

사업주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변기와 소변기를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남녀 구분한 표지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루피(USD 8.62)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51년 농장노동법 1951 § 9)

사업주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변기와 소변기를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남녀 구분한 표지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0루피(USD 17.24)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52년 광산법 § 20)

사업주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변기와 소변기를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남녀 구분한 표지를 해야 한다.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 12)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11, 19, 20)

농장노동법 (§ 9)

1952년 광산법 (1952년 제35호). (§ 20)

1993년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개정 (1993년 제41호). (§ 12)

4.8.3 식수

개요/인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식수가 가능한 곳에는 표식을 해야 하고, 화장실과 개방된 하수구로부터 규정된 거리가 떨어져야 한다.

(1948년 공장법 § 18)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위치에서 대량의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루피(USD 8.62)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51년 농장노동법 § 8)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식수가 가능한 곳에는 표지가 부착되어야 하고, 화장실과 개방된 하수구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1966년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 11)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18)

농장노동법 (§ 8)

1993년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개정 (1993년 제41호). (§ 11)

4.8.4 휴게실 및 식당

개요/인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휴게실, 점심식사 공간, 그리고 구내식당 혹은 간이식당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휴게실과 근로자들이 지참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점심 식사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공간에는 식수도 제공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또한 작업장 시설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간이식당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1948년 공장법 § 46, § 47)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설비가 잘 갖추어지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간이식당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루피(USD 8.62)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51년 농장노동법 § 11)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규정상의 다른 복지수단과 함께 간이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 37)

제한/의무

간이식당은 250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공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점심식사 공간은 150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공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1948년 공장법 § 46, § 47)

간이식당은 250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공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 37)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6, § 47)

농장노동법 (§ 11)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 37)

5.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원칙 및 관행에 따라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5.1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제반 요소

5.1.1 안전보건의 책임 및 준비사항을 구체화하는 정책 또는 계획

개요/인용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적 정책이나 견해를 기술한 공지문 그리고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마련되어 있는 수단을 공식화해 전달할 의무를 부여한다. 나아가, 사업주는 정책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개정된 정책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 경영자 및 점유자는 광산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작업과 관련한 비상조치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이 계획들은 안전보건 위험을 규명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하는 수단을 검토하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시설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점유자는 사고 시에 야기되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상술한 부지

내외의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 및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련한 서면화된 정책을 수립 및 입안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되어야 하고, 작업시설에 영어와 힌디어로 명백하게 게시되어야 한다.

폭발물을 제조하는 제조시설의 제조자나 사업주는 관할 기관에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안전관리계획은 사업주가 근로자 간에 임무와 책임의 부여, 유해와 위험의 식별, 교육 및 위험 경각심, 사고 및 후속 조사의 보고,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그리고 사고 시 비상조치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A(3))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 39)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보관 및 수입에 관한 규칙 (규칙 13 및 규칙 14)

채유시설 규정 (§ 111 및 § 112)

2008년 폭발물 규칙 (규칙 26(3))

5.1.2 안전보건 담당자 임명

개요/인용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담당할 특별 담당관을 선임할 의무가 있다. 이 담당관들은 안전담당관 또는 감독담당관으로 명명될 수 있다. 법은 비록 명백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상위 직급의 관리자만이 이러한 직위에 선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1954년 텔리 상점 및 시설 규칙. (§ 40B 및 § 49)

1952년 광산법 (1952년 제35호). (§ 6A)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 38)

2013년 작업장 내 여성 성희롱(예방, 금지 및 보상)법 (2013년 제14호). (§ 4)

채유시설 규칙 (규칙 26)

2008년 폭발물 규칙 (규칙 11)

5.1.3 위험성 평가서

개요/인용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건, 설비 또는 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주는 수반되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모든 위험성에 대한 서면 평가서를 발부하며 해당 기계와 물건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음을 충분히 증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A 및 § 7B)

5.1.4 안전한 작업 체계 및 절차

개요/인용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건강위험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작업시스템, 안전한 작업장 및 안전한 작업절차를 보장하는 수단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시스템 및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의료도구가 갖추어진 시설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작업장이 안전하고 작업장의 장애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모든 안전수단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990년 항만근로자(안전, 보건 및 복지) 규정 (§ 44)

살충제 규칙 (§ 38(1)(d))

지자체 고형폐기물(관리 및 취급) 규칙 (§ 4)

5.1.5 위험성 교육훈련 및 안내

개요/인용

법은 사업주에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작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필수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비상시 해독제와 안전수단 관련하여 훈련, 정보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와 항만 소유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훈련은

안전수단 관련한 정보 및 사고방지를 위해서 작업장에서 시행되는 예방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을 훈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A 및 § 111A)

1990년 항만근로자(안전, 보건 및 복지) 규정. (§ 111 및 § 114)

1923년 근로자 보상법 (1923년 제8호) [개정]. (§ 12)

1991년 손해배상책임보험규칙. (§ 4)

5.1.6 예방조치 결과의 검토 또는 평가

개요/인용

사업주 또는 작업장 점유자는 작업장에 적용 중인 산업안전보건 수단들과 시스템의 모니터링 보장 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이 법의 안전 관련 조항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건축 및 다른 건설 공사를 지속적이고 적절하게 감독해야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A)

1993년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개정 (1993년 제41호). (§ 44)

5.1.7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들과의 협의

개요/인용

사업주와 점유자는 작업시설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자들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협력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 또는 작업장 점유자는 작업시설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공식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및 계획으로 산업안전보건 수단을 채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한/의무

이는 특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과 관련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1G, § 7A)

5.2 특정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또는 기준을 이행할 의무

개요/인용

사업주 또는 작업장 점유자는 작업시설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공식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및 계획으로 산업안전보건 수단을 채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A)

6.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성 및 역량의 가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6.1 산업안전보건 역량

6.1.1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지원에 대한 요건

개요/인용

사업주는 정책, 현장 평가 및 비상계획을 마련할 때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1A)

6.1.1.1 전문가 또는 전문 서비스의 자격 요건

개요/인용

법은 사업주에게 특히 유해물질 취급 작업시설에서 유해물질의 취급 관련하여 요구되는 전문지식, 자격 및 경험을 갖추고 시설 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수단들을 제공할 역량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1C(b))

6.2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임명

개요/인용

사업주 및 점유자는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감독할 이른바 안전담당관이라 불리는 특별 담당관을 선임하도록 한 주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0B)

6.2.1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임명이 요구되는 종업원 수

개요/인용

안전담당관은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 또는 작업장 점유자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인도 전기 규칙 (§ 40B (1))

7.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7.1 자신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안전보건 또는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공장 내에 설치된 기구, 설비 또는 다른 물건들을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오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일반적 의무가 있고, 고의로 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들이나 다른 작업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보장할 목적으로 공장 내에 설치된 장치 등을 고의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루피(USD 1.72)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근로자국가보험법 (1948년 제34호). (§ 111(1) 및 (2))

7.2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을 위협하게 할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일반적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루피(USD 1.72)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111(1))

7.3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감독자의 의무

개요/인용

감독자는 작업장 시설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 감독자는 공장의 사업주 및 점유자처럼 작업장 시설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근로자국가보험법 (1948년 제34호).

7.4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위직급자의 의무

개요/인용

상위직급자는 작업장 시설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 상위직급자는 공장의 감독자, 사업주 및 점유자처럼 작업장 시설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52년 광산법 (1952년 제35호).

7.5 자신 및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자영업자의 의무

7.6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건의 준수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안전보건 또는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공장 내에 설치된 기구, 설비 또는 다른 물건들을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오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

고, 고의로 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들이나 다른 작업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보장할 목적으로 공장 내에 설치된 장치 등을 고의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루피(USD 1.72)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자료

1958년 편자브 상점 및 상업시설법 (1958년 제15호). (§ 111(1) 및 (2))

7.7 위험성 및 예방조치에 관해 질문할 권리

개요/인용

모든 근로자는 점유자로부터 작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한 정보를 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훈련을 받을 권리 및 작업장 시설의 산업안전보건 대책 상태 관련으로 관할기관에 적절히 건의할 권리를 갖는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111A)

7.8 위험 상황에서 피신할 권리

개요/인용

위험한 공정이 개입되는 공장의 근로자들은 사고로 인해 자신들의 목숨이나 건강에 긴박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가 있을 경우, 공장 내 감독자 또는 다른 담당관에게 알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근로자들이 피신할 수 있다는 명백한 언급은 없다.

비고/해설

법은 긴박한 위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알릴 근로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1H)

7.9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의 전환배치 권리

개요/인용

근로자는 공장 감독자에게 작업 시설 내 건강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권리가 있고, 그 후에 감독자는 유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 대상물을 조사하거나 철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비고/해설

법은 단지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뿐 근로자들의 피신할 권리는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장법 제111조처럼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위해에 대해 조치할 수 없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고자료

1952년 광산법 (1952년 제35호). (§ 9(h))

7.9.1 근로자가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 전환배치 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고 퇴직할 권리

개요/인용

근로자들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손상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비고/해설

1929년 근로자 보상법의 조항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참고자료

1952년 광산법 (1952년 제35호). (§ 3)

8.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협업 및 협조

8.1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

8.1.1 목적, 역할 및 기능

8.1.2 구성 및 위원장

8.2 위험성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

개요/인용

사업주와 점유자는 작업시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자들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협력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특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관련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1G)

8.3 안전보건 관련 대표자를 선임할 근로자의 권리

개요/인용

사업주는 작업장 시설 내 산업안전보건 준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1G)

8.3.1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기 위한 종업원 수 조건

8.3.2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의 적격성 조건

8.4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기능, 권리 및 권한

8.4.1 작업장 검사권

8.4.2 산업안전보건 정보 접근권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와 모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1923년 근로자 보상법 (1923년 제8호) [개정]. (§ 111 및 111A)

8.4.3 면담 출석권

8.4.4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권리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작업시설의 산업안전보건 수단이 부적절하게 제공되는 경우 외부 기관이나 대리인의 산업안전보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인도의 근로감독 개요 (§ 111 및 111A)

8.4.5 감독관 동행권

8.4.6 시설 사용권

8.4.7 직무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8.4.8 시정통지 교부권

8.4.9 사업주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권리

개요/인용

사업주와 점유자는 작업시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자들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협력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특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관련된다. 안전위원회는 협력과 논의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1G)

8.4.10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지시할 권리

8.5 사외 근로자 대표가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처리할 권리

8.5.1 작업장 출입권

개요/인용

작업장 외부의 대표자(예: 노동조합)는 노동쟁의의 해결에 관련되는 등 특정한 상황에서 작업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1926년 노동조합법 (1926년 제16호).

8.5.2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조사할 권리

개요/인용

작업장 외부의 대표자(예: 노동조합)는 노동쟁의의 해결에 관련되는 등 특정한 상황에서 작업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8.5.3 근로자들과 협의할 권리

개요/인용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작업시설 내 근로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1926년 노동조합법 (1926년 제16호).

8.5.4 근로자들에게 조언할 권리

개요/인용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작업시설 내 근로자들에게 조언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26년 노동조합법 (1926년 제16호).

8.5.5 강제이행 조치를 개시할 권리

개요/인용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정한 작업시설 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926년 노동조합법 (1926년 제16호).

8.6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8.6.1 근로자 대표의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참여

개요/인용

사업주와 점유자는 작업시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자들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협력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특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관련된다. 안전위원회는 협력과 논의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1G)

8.6.2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설치 조건

8.6.3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의 목적, 역할 및 기능

8.6.4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업무 기록

8.6.5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의사록 공유

8.7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의무 교육

개요/인용

법은 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일정한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1947년 인도노동쟁의법 (1947년 제14호). (§ 41G 및 41A)

8.8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8.9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리 및 직무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9. 특정 유해성 또는 위험성

9.1 생물학적 유해성

개요/인용

생물학적 유해성은 위험한 미생물이나 잘못 취급된 생물 폐기물에 대한 노출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원자력 에너지(방사선 방호)규칙

유해성이 있는 미생물, 유전자변형유기체(GMO)의 생산, 사용, 수출입 및 보관에 관한 규칙

9.2 화학적 유해성

9.2.1 취급, 보관, 식별표시 및 사용

개요/인용

법은 유해 화학물질의 보관, 사용 및 제조와 관련하여 명확한 라벨 및 안내서를 요구한다.

참고자료

유해성이 있는 미생물, 유전자변형유기체(GMO)의 생산, 사용, 수출입 및 보관에 관한 규칙

9.2.2 사용자의 안전보건에 관련한 제조자, 공급자 및 수입자의 의무

개요/인용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건 및 재료를 설계, 제조 및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적절히 시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물건의 제조자는 다양한 작업시설에서 근무 중에 해당 물건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해 화학물질의 사업주, 시설 점유자, 제조자, 공급자 및 수입자는 화학물질의 적절한 취급 및 보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상 의무가 있다. 이들은 주기적인 안전보고서를 제공하고 해당 물질의 사용과 건강상 위험에 중요한 정보를 공표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B)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보관 및 수입에 관한 규칙

9.3 인체공학적 유해성

개요/인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인체공학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극한 온도에 노출을 방지할 제어수단, 식수의 적절한 제공, 근로자의 피로를 되도록 줄이기 위한 휴게실의 제공과 함께 적절한 위생설비의 제공을 말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9.4 물리적 유해성

9.4.1 살충제

개요/인용

살충제의 제조자는 유해물질에 잘못된 상표부착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살충제의 사용으로 야기될 건강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작업장 내외부에 걸쳐 살충제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중의 안전상의 이유로 살충제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살충제법 (§ 29, § 17)

9.4.2 이온화 방사선

개요/인용

법은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고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1996년 원자력 에너지(시설)규칙 (G.S.R. 253).

9.4.3 진동 및 소음

개요/인용

사업주는 작업시설에서 기계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과 진동으로 야기되는 위험

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근로자국가보험법 (1948년 제34호).

9.4.4 고소작업

개요/인용

사업주는 고소작업을 하는 근로자 관련하여 펜스로써 안전수단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32(c))

9.4.5 밀폐공간 내의 작업

개요/인용

사업주는 작업시설이 적절히 환기가 되고 과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13 및 15)

9.4.6 작업장 시설의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위험성

개요/인용

법은 기능이 저하된 시설 및 건물의 보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0-A 및 § 14)

9.4.7 극한 온도에 대한 노출

개요/인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작업시설에서 극한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근로자국가보험법 (1948년 제34호). (§ 13)

9.4.8 화재 위험성

개요/인용

사업주는 적절한 수의 소화기의 비치,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보호장비의 제공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2008년 폭발물 규칙

9.4.9 연초류

개요/인용

법은 연초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1993년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개정 (1993년 제41호).

9.4.10 석면

9.4.11 나노기술 관련 위험성

9.4.12 작업장 내 에이즈 감염

참고자료

에이즈와 노동세계에 관한 국가정책

9.5 심리사회적 유해성

9.5.1 심리사회적 위험성

개요/인용

경제적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사회보장 체계나 보험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저감할 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근로자국가보험법 (1948년 제34호).

2008년 비조직 근로자 사회보장법 (2008년 제33호).

9.5.2 직장 폭력

개요/인용

사업주는 노동쟁의를 해결하고 작업장에서의 성희롱을 최소화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7년 인도노동쟁의법 (1947년 제14호).

2013년 작업장 내 여성 성희롱(예방, 금지 및 보상)법 (2013년 제14호).

9.6 기타 유해물질

개요/인용

모든 공장의 점유자와 사업주는 근로자, 주임감독관 및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위험, 건강상 유해 및 유해 극복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규정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한 점유자나 사업주는 야기된 손해나 손상에 의거해서 부과되는 다른 벌칙에 상관없이 면허취소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법 조항이 먼지, 흙 및 잔해 같은 유해물질로 야기되는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광산업의 근로자 관련한 고용 및 안전을 규제하는 법령, 공장에 관계되는 노동법, 건축 및 건설 작업을 규제하는 법령, 가사근로자와 육체근로자 같은 비공식 근로자를 다루는 법령에 담겨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11, 13, 14, 41b)

9.7 기계류

9.7.1 기계류 및 공구 관련 위험성

개요/인용

사업주는 작업장에서의 기계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21 ~ 30)

9.7.2 기계류 조작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기계류 설계자 및 제조사의 의무

개요/인용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물질을 설계, 제조 및 수입하는 자는 물건이 근로자들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적절히 시험하며,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물건의 제조자는 다양한 작업시설에서 근무 중에 해당 물건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B)

법은 위험기계의 제조자, 설계자 및 판매자에게 해당 기계의 산업표준을 지키고, 사람의 접근금지 지점을 포함하여 기계에 명확한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다. 이들은 기계 또는 장비 관련한 사용, 유지보수 및 일반적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담긴 매뉴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위험기계의 제조자는 확립된 안전기준에 맞는 기계를 생산해야 한다. 나아가, 제조자는 기계에 적합한 위험표지, 제조 상세 및 동력 조건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계의 결함으로 근로자에게 손상이 발생하면, 제조자는 입은 손상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가족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83년 위험기계(규제)법 (1983년 제35호) §§ 13-17)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B)

1983년 위험기계(규제)법 (1983년 제35호). (챕터 IV, § 3-17)

9.7.3 기계류 설계자,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공급자의 정보 제공 의무

개요/인용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물질을 설계, 제조 및 수입하는 자는 물건이 근로자들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적절히 시험하며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물건의 제조자는 다양한 작업시설에서 근무 중에 해당 물건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은 위험기계의 제조자, 설계 및 판매자에게 해당 기계의 산업표준을 지키고, 사람의 접근금지 지점을 포함하여 기계에 명확한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다. 이들은 기계 또는 장비 관련한 사용, 유지보수 및 일반적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담긴 매뉴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7B)

1983년 위험기계(규제)법 (1983년 제35호). (챕터 IV)

9.7.4 승인/인증된 공급자로부터 또는 승인/인증된 경우에만 기계류를 구입해야 하는 의무

개요/인용

사업주는 규정된 산업표준을 준수하는 기계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983년 위험기계(규제)법 (1983년 제35호).

9.7.5 기계류 및 장비 유지보수

개요/인용

법은 인도의 기계 및 장비의 사업주와 사용자에게 계획된 방법으로 주기적인 보수를 이행하고, 기계가 규정된 산업표준에 맞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비고/해설

이는 1948년 공장법, 1983년 위험기계법 및 1923년 근로자 보상법에 규정된 일반적 의무이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9.7.5.1 적용 장비 목록

9.8 특정 취약 근로자의 보호 규정

9.8.1 직장에서의 임신부 보호

개요/인용

법은 사업주에게 임신 중인 근로자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증명된,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업무 또는 고된 종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루피(USD 8.82)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중량물을 옮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한/의무

사업주는 분만 6주 전부터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비고/해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가 1961년 임산부복지법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조항이 다른 법령에 인용되어 있다.

참고자료

원자력 에너지(방사선 방호)규칙 (규칙 38(1))

1961년 임산부복지법 (1961년 제53호). (§ 4)

9.8.2 직장에서의 수유 여성 보호

개요/인용

임신 중인 근로자는 중량물을 옮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의거, 사업주는 수유 여성 근로자에게 생후 15개월까지의 영아에게 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2회의 휴식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루피(USD 8.82)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와 점유자는 여성근로자의 6세 이하 모든 어린이를 위한 탁아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탁아시설은 여성근로자에게 어린이를 먹이고 보살필 수 있는 필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는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우유와 다른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만 루피(USD 3506.05)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고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위반이 지속되는 하루당 1000루피(USD 17.53)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광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수유 근로자와 어린이가 2개월마다 등록된 의사로

부터 검진을 받도록 하는 탁아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 농장의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시설은 청결하고, 환기가 이루어지고 모자의 보호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루피(USD 8.76)의 벌금, 그리고 선고 이후에 계속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6개월의 징역과 1000루피(USD 17.53)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자력 에너지 관련 근무를 하는 여성이 있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충분히 환기가 되고,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무료로 간식과 우유를 제공하는 탁아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제시가 산업에서 여성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작업 시설에 탁아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탁아소는 환기가 잘 되고, 적절히 설비를 갖추고, 조명이 적절하고, 청결하며 위생적이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간식과 우유가 무료로 제공되고, 여성 근로자는 어린이에게 수유하고 돌볼 수 있는 적절한 회수의 휴식이 주어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50루피(USD 4.38)의 벌금이 그리고 선고 이후 계속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500루피(USD 8.76)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건축과 건설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의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탁아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탁아시설은 청결하고, 환기가 잘 되며 어린이 돌봄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루피(USD 17.52) 이하의 벌금 또는 선고 이후의 위반에 대해 하루당 추가로 100루피(USD 1.75)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한/의무

통상 3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공장의 사업주는 탁아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48)

농장노동법 (§ 12)

1966년 광산탁아시설규칙 (G.S.R. 516) [개정, 1994년까지의 경우에 대한 설명 및 참조]. (§ 10)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

35)

1996년 원자력 에너지(시설)규칙 (G.S.R. 253). (§ 73, 74, 75, 76)

1993년 수제시가 및 시가 근로자(고용조건)법 개정 (1993년 제41호). (§ 14)

1961년 임산부복지법 (1961년 제53호). (§ 11)

9.8.3 특정 작업, 과업 또는 교대근무에 대한 여성의 접근 제한

개요/인용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는 특정의 과업 및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심야조에 근무시켜서는 안 되고, 과중한 하중을 들게 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복지에 손상을 주는 업무를 수행케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인도 정부 중앙관보에 게시된 위험작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광업의 사업주와 점유자는 여성을 지하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안 되고, 지상작업에 주간근무로 일정 시간만을 근무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27 및 § 66)

1948년 봄베이 상점 및 시설법. (§ 34A)

1952년 광산법 (1952년 제35호). (§ 46)

9.8.4 특정 작업, 과업 및 교대근무에 대한 연령에 따른 제한

개요/인용

법은 사업주에게 다양한 업종에 있어서 청소년 고용에 관한 다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작업시간, 작업종류 그리고 청소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에 관계된다.

사업주는 청소년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청소년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하중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청소년 근로자가 위험한 업무활동에 참여하거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챕터 VII)

1948년 봄베이 상점 및 시설법. (챕터 VI)

1961년 자동차운송 근로자법 (1961년 제27호). (§ 14)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 38)

10. 사고/준사고 및 질병의 기록, 신고 및 조사

10.1 업무상 사고, 아차사고 및 업무상 질병의 원인을 기록 및 조사할 의무

10.1.1 업무상 사고

개요/인용

광산의 소유자, 대리인 또는 관리자는 사고를 기록하고 기록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모든 사고기록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52년 광산법 (1952년 제35호). (§ 23)

지자체 고형폐기물(관리 및 취급) 규칙 (§ 226)

10.1.2 아차사고

개요/인용

아차사고도 사고의 정의에 속하고 산업재해에 적용되는 조항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10.1.3 업무상 질병

개요/인용

사업주는 고용 중에 질환에 이환된 모든 근로자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 226)

10.2 산업안전보건 당국에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개요/인용

사업주는 지방노동청장에 사고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규정된 중앙 관청에 사고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사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사고에 대해서 환경산림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88)

1996년 건축 및 기타 건설 근로자 (고용과 근로 조건 규제)법 (1996년 제27호). (§ 210)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보관 및 수입에 관한 규칙 (규칙 5)

11.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감독 및 시행

11.1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임명

개요/인용

모든 주에 1948년 공장법, 주 공장규칙 그리고 공장 관련한 1986년 어린이 근로(금지 및 규제)법, 1961년 임산부복지법, 1923년 근로자 보상법 등 다른 노동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공장 감독단이 구성되어 있다. 공장 감독관은 이러한 법령 조항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과 지역 수준에서 선임된다. 또한 공장 감독단은 현장 감독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산업보건 및 산업위생 전문가를 배치한다.

주정부는 관할 지역의 공장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감독관으로 선임할 수 있다.

관할 지역 광산의 광업 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규정된 감독관 자격을 갖춘 자.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8)

1952년 광산법 (1952년 제35호). (§ 6 및 § 7)

11.2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권한

11.2.1 작업장 출입권

개요/인용

법에 따라, 감독관은 작업시설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고나 위험 상황의 조사/심문을 위해서 작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9)

11.2.2 검사, 시험 및 문의할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은 작업시설에서 발생한 위반을 조사하거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작업시설에 출입해서 등록부나 기록물을 수거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9)

11.2.3 조사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은 작업시설에서 발생한 위반을 조사하거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작업시설에 출입해서 등록부나 기록물을 수거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9)

11.2.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

개요/인용

감독관은 작업시설에서 발생한 위반을 조사하거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작업시설에 출입해서 등록부나 기록물을 압수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9)

11.3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시행 권한

11.3.1 명령 또는 통지의 교부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은 작업시설에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9(f) 및 (h))

11.3.2 금전적 벌칙을 부과할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만이 사업주와 관할 관청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벌금과 다른 벌칙 관련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11.3.3 면허 또는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만이 사업주나 점유자에 대한 범위반통지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11.3.4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요구할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기계의 사용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9(h))

11.3.5 기소 개시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만이 사업주나 점유자에 대한 범위반통지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11.3.6 기소 수행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만이 사업주나 점유자에 대한 범위반통지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11.3.7 기타 집행 권한

개요/인용

감독관은 사업장에 다음 통지 시까지 작업의 중지를 명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9(h))

11.4 법원의 제재 조치

11.4.1 법인에 대한 금전적 벌칙

개요/인용

최대- USD 1,740, 최소- USD 8.70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92)

11.4.2 자연인에 대한 금전적 벌칙

개요/인용

최대- USD 1,740, 최소- USD 8.70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 (§ 92)

11.4.3 비금전적 제재

개요/인용

작업금지 및 일시적 폐쇄가 법원이 법위반 공장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재의 일부이다.

11.4.4 형사상 책임

개요/인용

1860년 인도 형법 및 1973년 형사소송법은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에 대해 소추를 개시하는 주요 형사 법령이다.

참고자료

형법 (1860년 제45호).

1973년 형사소송법

11.4.5 자연인에 대한 징역 기간

개요/인용

3개월 이상 2년 이하

참고자료

1948년 공장법 (1948년 제63호).